

<별지 제2호> (개정 2012.4.24)

주요 경영상황 공시 항목

11. 기타 법인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수시공시 항목	공시양식	비고
가. 주식·현금배당(중간배당 포함)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11-1-1 ~11-1-2	
나.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가 임기 만료의외 사유로 퇴임한 때,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임한 때	11-2-1 ~11-2-4	
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때	11-3-1 ~11-3-2	
라. 지주회사 편입 및 탈퇴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11-4-1 ~11-4-2	
마.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하여 조치를 받은 때	11-5	
바.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을 때	11-6	
사.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통한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11-7-1 ~11-7-6	
아. 영업양도, 양수, 인대, 합병, 분할 등의 사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11-8-1 ~11-9-3	
자. 주권을 해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등록 또는 상장폐지·등록취소하기로 결정하거나 상장·등록 또는 상장폐지·등록취소한 때 및 증권이 상장·등록된 국가의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매매거래정지 등 기타조치를 받은 때	11-10-1 ~11-10-7	
차. 주주총회소집 결의 및 임시·정기주주총회 결과	11-11-1 ~11-11-3	
카. 기타 상기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결정이 있을 때	11-12	
타. 외국법인등이 국내 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결정이 있을 때	11-13-1 ~11-13-12	

(공시보고서 표지 - 공통)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5년 03월 31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
(영문명) Shinhan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Co., Ltd.
(홈페이지) <http://www.shbnppam.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9층
(전 화) 02-767-5777

대 표 이 사 : 민 정 기

담 당 임 원 : (직 책) 경영기획실 실장
(성 명) 박 철 우 (전 화) 02-767-9031

작 성 자 : (직 책) 경영기획실 사원
(성 명) 권 용 석 (전 화) 02-767-9047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법정공시 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11-1호)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2015.03.30(월)	오전 10:30
2.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9층 대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	1. 2014년 제1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3.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이사 보수 한도 결정 및 승인의 건	
4.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2015.03.30(월)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3 1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 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 학력	국적
남진용	1957.1.9	2016년도회 계연도결산 기에관한정 기주총회	신규선임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한나라당 기획재정부 금융투자협회 상근부회장	신한BNP파리 바자산운용(주) 상근감사위원	서섹스 대학교(英) 국제 경제학 석사	한국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 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 학력	국적
김임근	1963.7.25	2015년 도회계 연도결 산기에 관한정 기주총 회	신규선임	신한은행 신용리스크부 신한은행 리스크총괄부 신한금융지주 리스크관리팀	신한금융지주 리스크관리팀 상무	고려대 통계 학과	한국
전영교	1962.8.22	2015년 도회계 연도결 산기에 관한정 기주총 회	재선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신한은행 기획부, 재무부	신한금융지주 재무팀 상무	연세대 학교 경영 전문 대학원 석사	한국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 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 학력	국적
남진웅	1957.1.9	2016년 도회계 연도결 산기에 관한정 기주추 총회	신규선임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한나라당 기획재정수석 금융투자협회 상근부회장	신한BNP파리 바자산운용(주) 상근감사위원	서섹스 대학교(英)국제 경제학 석사	한국
김임근	1963.7.25	2015년 도회계 연도결 산기에 관한정 기주추 총회	신규선임	신한은행 신용리스크부 신한은행 리스크총괄부 신한금융지주 리스크관리팀	신한금융지주 리스크관리팀 상무	고려대 학교 통계 학과	한국
전영교	1962.8.22	2015년 도회계 연도결 산기에 관한정 기주추 총회	재선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신한은행 기획부, 재무부	신한금융지주 재무팀 상무	연세대 학교 경영 전문 대학원 석사	한국

* 남진웅(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김임근, 전영교(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 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 학력	국적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2. 사업목적 삭제			
3. 사업목적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집중투표제 도입·배제 세부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집중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배제		

<기재상의 주의>

- 주1) 상법, 정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한 때 신고한다.
- 주2) “의안 주요내용”은 의안 안전별로 요약하여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사업목적 변경, 이사·사외이사의 선임, 감사(감사위원회 위원포함)선임, 집중투표제 도입·폐지안건은 해당 세부내역서식에 따라 별도로 기재한다.
- 주3) 임원선임의 경우 “의안 주요내용”에 “상근이사 ○명, 비상근이사 ○명, 사외이사 ○명, 감사위원 ○명, 감사 ○명 선임” 등의 방식으로 임원 선임의 내용을 기재하고, 임원해임의 경우 “의안 주요내용”에 해임임원별로 각각 해임사유,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주4)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은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란에 기재한다.
- 주5) “신규선임여부”는 “신규선임” 또는 “재선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주6) “주요경력”은 선임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주요경력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주7) “현직”은 신고일 현재 당해임원의 소속기관명 및 직책을 기재하되, 다른 상장법인의 임원(상근비상근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인 경우에는 그 임기를 함께 기재하며, 임원선임 이후 퇴임여부시기 등을 함께 기재한다.
- 주8)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의 “사외이사 여부”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주9) 【감사선임 세부내역】의 “상근여부”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주10) 【집중투표제 도입·배제 세부내역】은 도입하는 경우 “변경 전”에 “배제”, “변경 후”에 “적용”을 기재하고, 폐지하는 경우 그 반대로 기재한다.
- 주11) 상기 기재사항 외의 외부감사인 변경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 주12)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 당해 사업연도 중에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자산총액 대비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비중을 기재한다)

(제11-11-3호)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			
제19기 (단위 : 백만원)			
- 자산총계	191,145	- 매출액	89,734
- 부채총계	32,195	- 영업이익	36,928
- 자본금	75,374	- 당기순이익	29,373
- 자본총계	158,951	* 주당순이익(원)	1,948
*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적정	
2. 배당 결의			
가. 현금배당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	기말배당금 1,685
			중간·분기배당금 -
		우선주	기말배당금 -
			중간·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25,400,000,000
	시기배당률(% (중간배당 포함))	보통주	-
		우선주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보통주	-
		우선주	-
	배당주식총수(주)	보통주	-
		우선주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3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6
	사외이사총수		4
	사외이사선임비율(%)		67%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비상근감사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1
4. 기타 결의사항		1. 2014년 제1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3.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이사 보수 한도 결정 및 승인의 건 (찬성 100%)	
5. 주주총회일자		2015.03.30(월)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주식 : 15,074,747주 2. 의결권 행사 주식수 : 15,074,747주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남진웅	1957.1.9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신규선임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한나라당 기획재정수석 금융투자협회 상근부회장	신한BNP파리 바자산운용(주) 상근감사위원	서섹스 대학교(英)국제 경제학 석사	한국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김임근	1963.7.25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신규선임	신한은행 신용리스크부 신한은행 리스크총괄부 신한금융지주 리스크관리팀	신한금융지주 리스크관리팀 상무	고려대 학교 통계 학과	한국
전영교	1962.8.22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재선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신한은행 기획부, 재무부	신한금융지주 재무팀 상무	연세대 학교 경영 전문 대학원 석사	한국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남진웅	1957.1.9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신규선임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한나라당 기획재정수석 금융투자협회 상근부회장	신한BNP파리 바자산운용(주) 상근감사위원	서섹스 대학교(英)국제 경제학 석사	한국
김임근	1963.7.25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신규선임	신한은행 신용리스크부 신한은행 리스크총괄부 신한금융지주 리스크관리팀	신한금융지주 리스크관리팀 상무	고려대 학교 통계 학과	한국
전영교	1962.8.22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재선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신한은행 기획부, 재무부	신한금융지주 재무팀 상무	연세대 학교 경영 전문 대학원 석사	한국

* 남진웅(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김임근, 전영교(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 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 학력	국적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2. 사업목적 삭제			
3. 사업목적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집중투표제 도입·배제 세부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집중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배제		

<기재상의 주의>

- 주1) 상법, 정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가 종료된 때 신고한다.
- 주2) 자산총계, 부채총계 등 재무항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며, 영업손실·당기순손실 등은 負(-)로 표시한다.
- 주3) “외부감사인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감사범위의 제한)”, “한정(기업회계 기준의 위배)”, “부적정”, “의견거절”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주4) “1주당 배당금”은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하되 차등배당의 경우 차등배당의 내용을 “기타”란에 기재한다.
- 주5) “시가배당률”은 당해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배당 기준일 1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한다.
- 주6)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에 대하여 배당되는 주식의 종류(우선주/보통주)를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기재하고 “주식배당률”은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한다.
- 주7) “기타 결의사항”은 의안 안전별로 요약하여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사업목적 변경, 이사·사외이사의 선임, 감사(감사위원회 위원포함)선임, 집중투표제 도

입.폐지안건은 해당 세부내역서식에 따라 별도로 기재한다.

- 주8) 임원선임의 경우 "선임임원 현황"에 "상근이사 ○명, 비상근이사 ○명, 사외이사 ○명, 감사위원 ○명, 감사 ○명 선임" 등의 방식으로 임원 선임의 내용을 기재하고, 임원해임의 경우 "기타 결의사항"에 해임임원별로 각각 해임사유,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주9)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은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란에 기재한다.
- 주10) "신규선임여부"는 "신규선임" 또는 "재선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주11) "주요경력"은 선임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주요경력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주12) "현직"은 신고일 현재 당해임원의 소속기관명 및 직책을 기재하되, 다른 상장법인의 임원(상근·비상근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인 경우에는 그 임기를 함께 기재하며, 임원선임 이후 퇴임여부시기 등을 함께 기재한다.
- 주13)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의 "사외이사 여부"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주14) 【감사선임 세부내역】의 "상근여부"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주15) 【집중투표제 도입·배제 세부내역】은 도입하는 경우 "변경 전"에 "배제", "변경 후"에 "적용"을 기재하고, 폐지하는 경우 그 반대로 기재한다.
- 주16) 상기 기재사항 외의 외부감사인 변경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 주17)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 당해 사업연도 중에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자산총액 대비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비중을 기재한다)